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92 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 안규백·황정아·오세희

박홍배 • 이개호 • 추미애

이광희 • 박범계 • 김기표

정성호 · 안태준 · 김준혁

이재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·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,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, 공중보건의사,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 · 체육요원, 전문연

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제1항 중 "사회복무요원"을 "보충역(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·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금의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 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·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	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-		
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<u>사</u>	<u></u> 보		
<u>회복무요원</u> , 대체복무요원 및	충역(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		
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	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ㆍ체육		
는 사람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	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		
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	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한다)		
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			
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			
있다.	,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